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05 발의연월일: 2020. 11. 13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· 서영석 ·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2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	제20조(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
수의 특례) ① 주식회사인 승	수의 특례) ①
인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	
부를 다른 주식회사(「자본시	
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	
률」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	
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	
다)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	
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	<u>재무상태</u>
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현존하는 순자	<u> </u>
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	
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	
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	
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